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

박 필 수 / 우리 협회 상임고문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 건설안전반장

I. 수립경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지난해말 기준 재해율 1% 미만인 0.99%(건설업 1.01%)를 달성하는 등 점차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전국의 산업현장에서는 하루평균 260명(사망은 9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재해발생수준은 선진국 또는 경쟁국인 일본 0.4%('93), 영국 0.64('93), 대만 0.45('92)의 2배 이상이나 되고, 특히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의 비율(사망만인율)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3배 이상 높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국민총생산(GNP)의 1.57%인 5조 6천억원에 이르고 근로손실일수(55,332천일)도 노사분규에 의한 손실일수(393천일)의 140여배에 이르는 등 산재예방면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진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현행 각종 재해예방정책, 안전보건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안)이 작성되었다.

동계획(안) 중 건설업의 재해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 소개함으로써 향후 3개년간의 각

기업의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I. 「산업안전선진화」의 의의

「산업안전선진화」란 국민소득과 경제수준에 걸맞게 산업안전이 사회적 적정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국민총생산(GNP) 규모를 기준으로 세계 10위권내의 주요선진국의 수준을 적정 산업안전수준이라 가정할 때, 재해율·강도율 등 각종 산재지표상의 재해지수와 재해예방 기술수준 등이 주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의 인간화(Humanization of work)」 바탕 위에 안전에 대한 가치가 삶의 기본가치로 자리 잡는 안전문화(Safety culture)가 정착되고, 기업에서는 노·사간 안전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참여와 협력에 의한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이 전개되며 안전법령·기준·제도·지원체계 등이 합리적이고 실효성 높게 완비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7년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1989년 노동부 산업안전국 설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 왔지만 재해감소가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선진국 또는 경쟁국가의 산업재해율과 비교해 볼 때 일본 0.4%(’93), 영국 0.64%(’93), 대만 0.45%(’92)로서 약 2배 이상이나 되며 사망만 인율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10여배까지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귀중한 인명손상은 물론이고 경제적 손실 또한 매우 커서 지난 한해 동안만도 근로손실일수가 노사분규에 의한 손실일수의 140여배에 달하는 등,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규모는 국민총생산(GNP)의 1.57%인 5조6천억원에 이르는 심각한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정보화·세계화」 시대인 21세기의 문턱에 서 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경제블록화, 세계의 지구촌화라는 변화 속에 세계 경제통합질서로서 노동기준과 무역조건의 연계(BR), 국제안전인증제(가칭 ISO18000) 도입 등 안전이 새로운 가치척도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세계적 변화의 조류에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대응하며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21세기 선진복지국가건설을 위하여 우리는 「안전」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중심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안전이 생활화·체질화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법과 안전수칙과 질서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사회시스템과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삶의 모든 터전에서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임금 등 기초적 근로조건의 확보라는 「생존권적」 차원을 넘어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이라는 「생활권적」 욕구를 실현시키며 모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상식의 회복, 발상의 전환, 사고의 혁신을 바탕으로 산재예방의 기술, 제도, 정책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와 새로운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의식과 제도의 세계화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안전의 획기적인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이제까지의 정부주도적인 안전정책을 벗어나 안전의 주체인 기업주와 근로자 스스로에 의한 노력 및 노사공동의 협력체제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로써 경제체제 비교우위요건인 국가경제의 효율성 및 생산성의 향상을 이룰 수 있으며, 무한경쟁시대를 이겨내고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에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수립·제시함으로써,

첫째, 우리나라가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인 「세계화」를 지향하고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둘째, 근로자에게는 아름다운 꿈을 실현하는 보람의 일터를 만들어주고 「안전권」과 「건강권」을 확보함으로써 「노동의 인간화(Humanization of work)」를 실현시켜 근로자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셋째, 인간생명 존중에 바탕을 둔 「안전」이 우리사회의 중심가치로 자리잡도록 하여 진정한 의미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한다.

Ⅲ. 산업안전선진화와 우리의 대응

1. 국내·외 여건변화와 전망

- 국제경제·사회의 구조개편에 따른 새로운 규범의 등장
- 경제수준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 제고의 필요

성 대두

-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산업재해의 다양화
-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해요인 증가
- 「노동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 등 근로자의 의식 변화

2. 우리의 산업안전 현황

- '80년대 이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치중하여 산재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은 부족
- '80년대 진입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정('81년), 산업안전공단 발족('87년) 및 산업안전국 설치('89년) 등 재해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 지난해말 재해율 0.99%를 달성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대단히 큰 실정
 - ※ '95년도 경제적 총손실액은 5,667,887백만원
 - ※ '95년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55,332천일)는 노사분규(393천일)보다 140여배 높은 수준
 - ※ '92년도 주요선진국의 재해율·사망율 : 일본(0.39%, 0.46), 영국(0.67%, 0.15), 싱가포르(0.87%, 1.51)

IV. 산업안전선진화 추진 목표

2000년까지 재해율 0.5%,
사망만인을 1.0 달성

-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인 「세계화」를 지향하고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 사업장의 안전은 1차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지고 해결하며, 근로자도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노사간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전개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노동의 인간화(Humanization of work)」와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
- 우리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산재예방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안전법령·기준·제도·지원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완비
- 노동기준(안전·보건)과 무역조건의 연계, 국제안전인증제(ISO 18000) 도입 등에 대비 안전보건관리규범의 세계화
- 인명존중 이념에 바탕을 둔 「안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안전」이 국민의식속에 생활화·체질화되어 우리사회의 중심가치로 자리잡는 안전문화 정착
-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복지국가 실현을 도모

V. 산업안전선진화 중점 추진 과제(발책)

1.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평가제 시행

- 사업장 안전보건 유지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선진형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체제확립 유도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

- 주관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 평가주기 : 매 2년마다(최초 평가는 '96 하반기 실시)
- 평가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 안전보건관리 체제,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작업환경측정 및 검진실시,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심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이행 및 사내안전·보건교육 등
 - 당해 기업의 재해율이 동종업종(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중분류) 평균재해율의 50%(1/2) 이하, 사망만인율이 1.0 이하이고
 - 최근 3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치가 허용기준의 1/2수준 이하이고 직업병자 및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 무재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 노·사 대표가 함께 안전보건활동을 적극 지원·참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업장으로서
 -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종합적인 경영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가 선진국 수준으로 추천된 기업
 - ※ 해당기업의 협력업체(매출액의 50% 이상을 모기업에 의존하는 업체)도 위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노사분규, 환경보호, 기업간 공정거래 측면에서도 활동상황과 실적이 양호한 사업장
- 평가기준
 -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위원회」에서

제정

- ※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학식과 덕목이 풍부한 민간 유명인사
 - 위 원 : 노·사, 학계, 언론계 및 관계부처 관계자 20명 내외로 구성
 - 임 무 : 평가기준 제정, 평가등급 부여
- 평가항목 : 20여개 항목
- ※ 평가항목에 포함될 주요내용
 -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의식 및 재해예방 투자노력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계자 활동
 -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도
 - 각종 안전보건관련 문서화된 기록 등
-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평가위원회와 외부 전문평가기관이 협의 결정
- 업종별 평가기준 구분 : 제조업(중공업, 경공업)과 건설업(중건설, 일반건설, 경건설)
- 평가방법 및 절차
 - 기업이 자율적으로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항목에 대해 자체평가를 받아 산업안전공단에 신청
 - ※ 외부평가기관은 공인된 자체평가지수를 개발·사용하고 있는 법인
 - 산업안전공단(지역본부 및 지도원)에서 안전보건관리실태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 ※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대한 확인은 생략
 - ※ 조사 확인시에는 반드시 근로자(노동조합) 대표를 참여시키고 의견을 청취하여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유지
- 평가위원회에서 해당기업의 안전·보건관리수준을 심의하여 평가등급 부여
 - 초일류(A) :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기업(가칭 ISO18000 도입시 이를 인증받을 수 있는 기업)
 - 우수(B) : 안전·보건관리활동이 우수한 기업
 - 보통(C) : 안전·보건관리활동이 보통인 기업
- 평가결과 등급별 기업명단을 TV, 라디오, 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해 공개
- 초일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노동부장관 명의의 「인증패」 수여
- 2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에 대한 각종 감독 등 모든 행정지도 배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유예
 - 유예기간 : 선정 후 2년간
 - 유예대상 : 사망 등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사회적 물의야기 재해 및 근로자 진정제기에 의한 법 위반을 제외한 모든 법 위반 사항
- 초일류기업(협력업체 포함)에서 추천하는 산업안전보건관계자 국·내외 산업시찰 지원
- 산업안전보건대회시 정부포상 및 안전보건대상 우선 선정
- 산업재해예방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2. 산재예방 우수사업장 산재보험료 부담 경감

- 산재보험의 재해예방투자 유인기능강화로 사업장 자율재해예방활동 촉진
- 개별실적 요율의 증감을 상향 조정

- 현행 개별실적요율 증감율을 ±40%에서 ±50%로 확대조정
- 개별실적요율 적용범위 확대

—(현 행)—

- 건설업 :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

—(개 선)—

- 건설업 :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실적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3. 대기기업의 협력업체 재해예방활동 지원 강화

- 대기기업과 협력업체간의 협조체제강화로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 대기기업의 도급금지대상 유해작업 확대 및 안전보건조치 강화
- 현행 도급작업, 중금속 제련작업, 제조·사용허가물질 취급작업 외에 위험기계·기구에 의한 작업, 소음·분진발생 및 유기용제 취급작업을 추가
 - ※ 세부적인 도급금지 대상작업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함
- 협력업체에 대한 대기기업의 안전교육, 기술지원 촉진
 - 조세·금융지원, 안전보건기술 책임지도 등
- 협력업체의 재해예방활동 지원체제 구축
- 대기기업과 협력업체간 공동재해예방 활동 모델 개발·보급

- 안전관리조직, 안전서약서 작성, 주요기계·기구 취급 및 운영관리, 안전점검 등
- 대기업, 협력업체의 공동재해예방활동 체제 구축
 - 대기업에서 협력업체 재해감소목표 설정 및 재해를 관리
 - 안전보건관리 우수 협력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시행
 -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하도급자 선정시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 동 제도를 시행하는 대기업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시 우대
 - 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지급을 지도하고 목적외 사용시 협력업체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유도
- ※ '95. 1. 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 29조 관련 도급사업에 있어서 협력업체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 대기업 및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이행에 대한 공동책임 부여
 -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서상에 대기업의 안전보건관리의무 및 책임 명기를 의무화
- 협력업체의 재해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대출시 대기업의 보증지원 유도
- 사업주·근로자·협력업체 「공동위험상황 감시단」 설치·운영
- 「공동위험상황감시단」 구성대상 업종
 -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토사석채취업, 자동차제조업(조립제조) 등 원·하도급 사업장이 함께 작업을 하는 사업장
- 「공동위험상황감시단」 구성

- 모기업과 협력업체(하청)의 사업주 및 근로자 동수로 개별기업별 3인 이상으로 구성
- 개별기업별 안전보건관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반드시 참여
- 「공동위험상황감시단」의 권한 및 역할
 - 원·하도급 사업장 공동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실태 점검
 - 사망·부상 등 각종 재해발생시 작업상황 평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시설물의 안전, 작업기계·기구의 안전, 작업공정의 안전,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 등 감시
 - 감시요원별 적발된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감시단 회의에 부쳐, 자체 시정·개선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관할지방 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
 - 급박한 위험상황이 발견될 시 「작업중지」 권한 부여
 - 「공동위험상황감시단」은 근로감독관의 각종 점검시 반드시 참여

4. 노·사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 사업주의 안전경영의식 제고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유도
- 사업주에 대한 안전경영 교육 강화
- 금속제품제조, 화학제품제조 등 재해율이 높은 위험제조업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
- ※ 연차별 교육계획(안)

연 도	'97	'98	'99
대상업종	9개 위험제조업종	18개 위험제조업종	
대 상 자	29,012	85,665	

- ※ 중국은 '95. 1 발효된 노동법에 따라 사업주와 공장장에게 노동법 세미나를 수강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세미나 종료 후 시험을 실시, 합격증을 발부함
- 만약 합격증을 받지 못한 기업에서 사고 발생시 또는 노동법 위반사항 적발시는 사업주를 신문지상에 공고하고 가중처벌함
- ※ 일본에서는 경제인 단체인 일본경제인연합회에서 경영자 안전세미나, 예비경영자에 대한 안전경영교육(2주간)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은 산업안전공단 주관하에 한국산업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업표준협회, 경총, 전경련 등 전문교육기관 또는 사업주 단체와 공동으로 실시
- 교육형태는 대상자를 업종별로 구분, 세미나·워크샵 등의 형태로 하고
 - 분임토의를 통해 공동주제에 대한 주제발표, 전체토론 등을 전개, 참석자 전원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함
- 교육이수 사업주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시 가점 부여
- 법위반 사업주교육대상 확대
- 현행 「벌칙성 교육」 대상을 「전업종, 교통사고, 개인질병 등 기술적인 원인에 기인하지 않는 연간 사망자 2인 이상 발생사업주」 → 「전 업종별(중분류) 평균재해를 이상 사업장으로서 연간 재해 3건 이상 발생사업주」로 확대
- 교육시간은 현행 「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으로 확대
- 교육은 산업안전공단 각 지도원별로 시행되

- 산업안전공단 지도원이 없는 지역은 안전·보건협회 등 재해예방민간단체에 위탁 실시
- 교육방법은 기존의 교재에 의한 획일적 강의식 방법에서 탈피, 업종별로 구분하여 세미나 형태로 운영하고
 - 교육내용은 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자의 임무와 역할, 재해발생사례와 예방대책 등 현장에 적용가능한 내용으로 전환

※ 연차별 교육계획(안)

연 도	'96	'97	'98	'99
대상업종	전 업 종			
대상선정 기준	연간 사망자 2인 이상 발생사업주	연간 재해 3건 이상 발생사업주		
대상자 (명)	40	11,844	20,008	32,645

* 대상자는 '95년도 기준임

- 사업주의 안전경영에 대한 의식조사
-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공단 지도원의 각종 재해예방 지도·점검시 점검표에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 추가
 - 경영방침에 안전포함 여부, 재해예방투자 실적,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실적, 안전활동의 생산성 향상에의 기여도, 사업주의 재해예방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등
- 특히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및 감독시에는 반드시 사업주, 근로자의 안전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병행 실시
- 측정, 조사결과 취합 및 분석을 정례화하여 정책수립에 반영
- 사내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지원
- 사내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 지정확대
 - 지정대상업종 : 제조, 건설, 조선, 항만·하역 및 운수업 등

- 지정대상교육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등 기존기관을 우선 지정하고 활용가능한 다른 민간재해예방단체도 지정

5.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 사업장 법령준수 풍토조성으로 최저 안전보건기준의 이행과 재해예방활동 촉진
- 법 위반 사업주 처벌기준 강화
- 벌칙기준 상향조정

(현 행)

-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저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개 선(안))

-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저 「6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
 - 현행 최저 100만원 이하~최고 300만원 이하 → 최저 300만원 이하~최고 1,000만원 이하
 - 과태료 부과대상 범위반 항목별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
- 연간 3건 이상 신체장해재해로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 구속 수사 등 강력 조치
- 법인 대표자에 대한 산재예방 의무부과 및 처벌강화

- 법인인 경우 법인을 처벌하는 외에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여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
- 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업주 명단 공개
 - 매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사업주, 위반내역 등을 공개
 - ※ 미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정기적으로 법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계도
- 사업장 지도감독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현장교육 및 경고 조치
- 재차 적발시에는 의법처리
 - 사법처리 :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청회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위반행위 시정 요구 불이행시(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부과 : 지급된 보호구 미착용 등 근로자 준수사항 위반시
 - ※ 근로자에 대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시에는 사전에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 등 법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제재 확대
- 적용대상 : 현행 건설업에 대한 제재를 제조업 등 전 산업에 적용확대
- 제재대상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3명 이상 사망한 중대재해 또는 인근주민이나 환경에 피해를 준 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제재기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물품의 제조·구매 등의 입찰시 최저

2월~최고 1년간 참가자격 제한

- 입찰참가자격제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시 최고 6월 이하의 영업정지

※ 영업정지기간 결정기준

- 중대재해 : 재해자 또는 사망자수
- 중대산업사고 : 사망자수, 금액으로 환산된 인근주민 및 환경에의 피해정도

※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

- 사망자 3~5명(4월 제한), 6~9명(6월 제한), 10명 이상(12월 제한)

※ 현행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건설업법 시행령 제49조)

사 망 자 수	제 재 내 용	
	영 업 정 지	과 징 금 부 과
- 10명 이상 사망	4월	4,000만원
- 6~9명 사망	3월	3,000만원
- 3~5명 사망	2월	2,000만원

□ 산재은폐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 산재은폐사례 파악 철저

- 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보험비 환수사업장 및 대상근로자 명단과 상병기간 등을 지방노동관서로 통보 정례화
- 산재전문의료기관을 통해 자체 공상처리한 요양환자내역 조사

○ 산재은폐사업주에 대한 법 위반사항 조사 및 조치철저

- 산재은폐 발견시 즉시 산업안전감독 실시
- 무재해 목표달성, 정기감독면제 등 각종 수혜를 목적으로 산재발생사실을 은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설

VI. 건설재해예방

1. 공사단계별 안전성 평가 강화

□ 건설재해의 근원적 예방체계 강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심사 및 확인제도 개선

○ 현행 사업주(해당사업장 안전관리부서)가 작성하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일정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

※ 일정자격을 갖춘 자 : 건설분야 기술사, 건설안전지도사 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 공정별 위험요인분석 및 위험방지대책 첨부

○ 산업안전공단에서 심사결과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

○ 심사누락방지 및 심사 내실화를 위한 심사전문요원 보강

○ 확인검사 횟수 증대(연 2~4회에서 연 4회 이상) 및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

○ 심사 및 확인검사내용 DB화

□ 안전작업절차서 작성 및 이행지도

○ 건설공종별, 공정별 안전작업절차서(매뉴얼) 작성 유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안전작업절차서 작성지도 및 확인검사시 이행 여부 확인

※ 일본의 경우 사전안전계획서 심사제도 내에 안전작업절차서 포함을 의무화하고 있음

○ 안전작업절차서 작성기법 및 표준모델 개발·보급

- 비계, 거푸집, 흙막이지보공, 철골, 철근공사 등

- 모델개발시 시공자, 관련 부처 관계자, 학계를 참여

○ 사업장 기술지도시 안전작업절차서 작성 및

이행확인

□ 안전작업기술 개발유도

- 자동화·무인화 작업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 추락·붕괴 등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의 안전작업기술 개발
 - 무비계 작업, System 거푸집, Half Slab 공법 등 보급
- 매년 우수 안전작업기술 개발·사용 건설사 업장 선발, 포상 추천

2. 종합적인 건설안전관리체계의 구축

□ 발주·설계·시공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기술지도 수준향상

□ 종합안전관리자(Total Safety Coordinator) 제 도입

- 발주자가 감리자 또는 안전전문가 중에서 공사지식, 실무경험이 많은 자를 종합안전관리자로 선임
 -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에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 안전작업절차서 준수, 발주·감리·설계자 및 원·하도급업체 사이의 안전관리에 행조정 등 안전관리기술지원 및 조정업무,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지도 등을 수행
- 공사규모에 따라 종합안전관리자의 기술자격을 등급별 분류, 등록관리

□ 건설현장 관계부처 합동점검제 실시

- 건설안전 합동점검팀 상설운영
 - 노동부·건교부·지방자치단체·산업안전공단·대학교수·건설사업장 안전전문가 등으로 건설안전 합동점검팀을 구성, 인력풀체(Brain Pool)로 운영
 - 공사유형 및 점검종류에 따라 현장점검시 선별 활용

- 합동점검시 공사감독·설계감리자 및 종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참여

□ 지역별·업체별 건설공사 협의체 구성 유도

- 협의체 구성 대상
 - 지하철·고속전철·신도시건설 등 대규모 집단 건설현장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공사종류가 유사한 사업장

- 협의체 기능 : 상호 안전순찰(Safety Patrol), 안전정보 교류 등

□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참여 확대

- 전문기관 지정요건 변경
 - 상호경쟁을 통한 「기술지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 전문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및 조건완화

- 전문기관 업무영역의 지역제한을 폐지
- 업무지정승인은 전문기관이 소재한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일임

□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수준 향상

- 기술지도요원의 자격요건 및 실무경력을 강화
 - 일반건설부문 : 산업안전학과 졸업자 및 양성안전관리자는 점진적으로 건설안전기사, 토목·건축기사로 대체
 - 전기·통신부문 : 산업안전학과 졸업자 및 양성안전관리자는 점진적으로 전기·통신기사로 대체

□ 전문기관의 시설장비 현실화

- 장비기준 중 불필요한 장비는 배제, 사용빈도가 높은 휴대용 장비의 보유 확대 및 현장특성에 맞게 차별화
- 현행 기술지도기관의 시설기준 중 불필요한 장비실기준은 폐지하고 사무실 기준으로 일원화

○ 기술지도요원에 대한 교육강화

- 산업안전공단에 관련 전문화교육과정을 개설, 기술지도요원 능력향상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의 선정기준 등의 현실화
- 20억 이상 공사 기술지도 주기조정 : 분기 1회 → 2개월 1회
- 기술지도요원 담당사업장수 조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대상 건설현장은 기술지도대상에서 제외
- 현행 공사기관과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수수료를 공사기관과 공사규모별로 세분화

3. 건설공사 가시설의 안전성 확보

- 추락·낙하·전도 등 가시설로 인한 재래형 재해 근절
- 가설공사 안전시설설계도서 작성 의무화
- 건설공사 종류별 표준 안전시설 기준제정
 - 산안법 및 건설관련 법령상의 가시설 설계규정 보완
 - ※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시공상세도와 상호업무의 연계성 강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 안전시설설계도서 첨부
- 가설기자재 안전수준 향상
- 점검대상 가설기자재의 품목 확대(현재 19종 → 30종) 및 재사용기준 제정

- 가설기자재의 품질향상 및 표준화유도를 위한 업계 자율규제 유도
- 신규개발품목 안전성 인증제 시행
- 가설공사 안전모델의 개발 및 보급
- 가설공사 관련사고를 유형별로 분석, 모델화
 - 재해다발 공종인 거푸집, 비계, 흙막이, 터널굴착 등을 대상
- 불량 가설기자재 유통 근절
- 점검 가설기자재 생산 유도 및 수거검정 확대 실시
- 기준미달 또는 불량가설기자재 사용현장 공사중지 등 조치

4. 표준안전관리비 계상항목 확대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의 합리화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 확대
- 공사내역서 등을 검토, 가설공사비와 안전시설비를 구분, 안전관리비 항목 대폭 확대
- 안전관리비 편성기준 개발·보급
- 개발부서 : 안전연구원(토목·건축연구실)
- 주요내용 : 주요 공사종류별 안전관리비 실행예산편성 기준
- 도급순위 100대 건설회사에 배포, 각종 건설현장 지도방문시 이행여부 확인 등 준수 지도

참 조

건설중대재해 통계분석('96 1/4분기)

1. 개 황

'96년 4월 현재 조사대상 전산업의 재해근로자 중 사망자는 296명으로 지난해의 331명에 비하여 35명(10.6%)이 감소하고 있으나 반면 건설업의 근로자 사망자는 175명으로 지난해의 127명보다 48명(37.8%)이 증가하여 건설업의 중대재해는 급증하고 있어 증가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다.

※ 최근 사망재해 발생현황(발생일 기준 조사대상)

구 분	'96. 1~4	'95. 1~4	증 감	증 감 율
전 산 업	296	331	△35	△10.6
건 설 업	175	127	48	37.8

※ 95년도 건설재해 발생현황

(단위 : 인)

구 분	'95	'94	증 감	증 감 율
근 로 자	2,240,990	1,978,629	262,361	13.3
재 해 자	22,542	24,271	△ 1,729	△ 7.1
사 망 자	715	743	△ 28	△ 3.8
재 해 율	1.01	1.23	△ 0.22	△ 17.9

(95년도 건설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조2천억원으로 전체 손실액 5조7천억원의 38.6%를 차지함)

2. 96년 1/4분기 건설중대재해 발생현황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발표한 올해의 1/4분기 건설중대재해 통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사망재해는 88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조사건수 79건에 비해 1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95	'96	증 감
조 사 건 수	79	88	+9(11.4%)

◇ 지역별 현황

분기 건설중대재해 통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사망재해는 88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조사건수 79건에 비해 11.4%가 증가한 것으로

(단위 : 건수)

산 하 기 관		'95	'96	증 감
총 계		79(100%)	88(100%)	+9
경 인	소 계	34(43%)	28(32%)	-6
	서울북부	20(25%)	10(11%)	-10
	서 북	4(5%)	5(6%)	+1
	수 원	8(10%)	8(9%)	-
	인 천	2(3%)	5(6%)	+3
소 계		9(12%)	12(14%)	+3
충 청	대 전	7(9%)	8(9%)	+1
	광 주	2(3%)	4(5%)	+2
	소 계	15(19%)	20(23%)	+5
전 라	광주본부	13(16%)	14(16%)	+1
	전 주	2(3%)	6(7%)	+4
	소 계	20(26%)	28(31%)	+8
	부산본부	2(3%)	3(3%)	+1
경 상	대 구	9(11%)	4(5%)	-5
	대구대남	5(6%)	9(10%)	+4
	창 원	4(5%)	9(10%)	+5
	울 산	-(-%)	3(3%)	+3

◇ 지역별 기후적인 요인

(단위 : 건수)

구 분	'95	'96	증 감
계	79	88	+9
경 인	34	28	-6
충 청	9	12	+3
전 라	15	20	+5
경 상	20	28	+8

◇ 발생형태별

발생형태별(건설업 특성에 따른 분류)로는 추락이 전체의 49%인 43건으로 약 50%를 점하고 있어 여전히 재래형 반복재해가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음은 건설장비재해가 14%로서 크레인 등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발생 형태별(일반적 유형분류)

(단위 : 건수)

계	추락	협착	깔림	낙하	충돌	붕괴	감전	화재폭발	기타
88(100%)	45(51)	9(10)	6(7)	7(8)	3(3)	8(9)	4(5)	3(3)	3(3)

◇ 발생 형태별(건설업 특성에 따른 분류)

(단위 : 건수)

계	추락	건설장비	낙하	붕괴도괴	토사붕괴	감전	운반취급	화재폭발	질식
88(100%)	43(49)	12(14)	9(10)	8(9)	6(7)	3(4)	3(4)	2(2)	1(1)

◇ 월별

월별로는 기온이 낮은 1월이 41%, 2월이 27%로서 68%가 동절기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단위 : 건수)

계	1월	2월	3월
88(100%)	36(41%)	24(27%)	28(32%)

◇ 공사종류별

공사종류별로 보면 건축분야가 65%를 점하고 있어 토목 등 타분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플랜트 공사에서의 재해가 7건에서 1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단위 : 건수)

구 분		'95	'96	증 감
계		79(100%)	88(100%)	+9
건 축	소 계	50(63%)	57(65%)	+7
	아파트	16(20%)	16(18%)	-
	빌딩	13(16%)	12(14%)	-1
	플랜트	7(9%)	19(21%)	+12
	기타	14(18%)	10(12%)	-4
토 목	소 계	15(19%)	19(22%)	+4
	지하철	7(9%)	2(2%)	-5
	도로, 철도	5(6%)	10(12%)	+5
	기타	3(4%)	7(8%)	+4
전기공사		8(10%)	8(7%)	-
채석업		6(8%)	2(3%)	+4
기타		-	2(3%)	+2

◇ 기인물별

기인물별로는 비계발판 불량에 30%를 점하고 있어 건설공사 가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단위 : 건수)

계	비계발판	자재 및 물질류	리프트 및 인양기계	개구부	구조물 및 적재물	전기설비	건설장비	기타
88(100%)	26(30)	14(16)	11(12)	11(12)	10(11)	6(7)	6(7)	4(5)

◇ 공사금액별

공사금액별로는 20억원 미만에서 38%를 점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20억원 미만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담기술지도사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단위 : 건수)

계	2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50억-100억 미만	100-300억 미만	300억 이상
88(100%)	33(38%)	8(9%)	8(9%)	19(21%)	20(23%)

◇ 공종별

공종별로는 형틀공사가 24.3%로서 가장 높고 전기공사, 해체공사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의 감전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단위 : 건수)

계	형틀공사	전기공사	해체공사	기계설치	철골공사	굴착공사	지붕공사	도장공사	채석공사
88(100%)	20(24.3%)	8(9.7%)	7(8.5%)	5(6.1%)	5(6.1%)	4(4.8%)	4(4.8%)	4(4.8%)	3(3.6%)
	기초공사	토공사	철근공사	석공사	조적공사	배관공사	흡관매설	되메우기	거치공사
	3(3.6%)	3(3.6%)	2(2.4%)	2(2.4%)	2(2.4%)	1(1.2%)	1(1.2%)	1(1.2%)	1(1.2%)
	집공사	철물공사	수장공사	타일공사	콘크리트	기 타			
	1(1.2%)	1(1.2%)	1(1.2%)	1(1.2%)	1(1.2%)	6(7.8%)			

◇ 직종별

직종별로는 목공이 24.3%로서 가장 높고 보통인부 15.8%, 중기공 7.4%, 전공 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공종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건수)

계	목공	보통인부	중기공	전공	기계설치	용접공	철골공	비계공	배관공
88(100%)	20(24.3%)	17(15.8%)	8(7.4%)	6(5.6%)	6(5.6%)	6(5.6%)	6(5.6%)	5(4.6%)	4(3.7%)
	철근공	타일공	석공	직원	조적공	미장공	차량운전	발파공	도장공
	4(3.7%)	3(2.8%)	3(2.8%)	3(2.8%)	3(2.8%)	3(2.8%)	2(1.8%)	2(2.8%)	2(2.8%)
	잡철금속	줄눈공	우물공	흡관매설	점합공	잡 부	기 타		
	1(0.9%)	1(0.9%)	1(0.9%)	1(0.9%)	1(0.9%)	1(0.9%)	1(0.9%)		

◇ 발생형태별 기인물 현황

형태별 기인물은 추락의 경우 비계 및 작업발판이 원인으로 된 경우가 많으며 개구부에 의한 추락, 구조물 및 적재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 건수)

기인물 \ 발생형태	계(%)	구성비(%)	추락	끼임	깔림	맞음	충돌	감전	기타
계	88	100	43	12	7	7	6	4	9
구성비(%)	100%		48.8%	13.6%	7.9%	7.9%	6.8%	4.5%	10.2%
비계및 작업발판	26	29.5	20			3	1	1	1
자재 및 물질류	14	15.9	3		5	2	1		3
리프트 및 인양기계	11	12.5	1	3	1	1	3	1	1
개 구 부	11	12.5	11						
구조물 및 적재물	10	11.3	6	1	1	1			1
전기기구	6	6.8	1	3				2	
차량계 및 건설기계	6	6.8	1	5	2				
환경 및 폭발물	3	3.4							3
기 타	1	1.1					1		

◇ 재해자 연령별

연령별로는 41~50세가 28%로서 가장 높고 31~40세(23%), 51~60(21%)의 순이다. 30세 이하가 17%인 반면 61세 이상이 11%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현장의 고령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단위 : 건수)

계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108(100%)	0	18(17%)	25(23%)	30(28%)	23(21%)	12(11%)

◇ 건설업특성에 따른 세부 재해유형 분류

재해유형분류를 보면 비계·틀비계에서의 추락이 14.77%로서 가장 높고 거푸집에서의 추락(13.64%), 단부개구부에서 추락(7.95%), 자재취급중의 물건 낙하·비래(7.95%), 이동식 크레인(6.82%)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건수)

발생 행태	세부분류	건 수	구 성 비(%)	비 고
	총 계	88	100	
추 락	소 계	43	48.86	
	비계, 틀비계에서	13	14.77	
	바닥개구부에서	5	5.68	
	단부개구부에서	7	7.95	
	전기설비에서	1	1.14	
	법면사면에서	2	2.27	
	피트에서	1	1.14	
	거푸집에서	12	13.64	
	보통 구조물에서	2	2.27	
낙하비래	소 계	9	10.23	
	크레인등으로 운반중	2	2.27	
	자재취급중의 물건	7	7.95	
붕괴·도괴	소 계	8	9.09	
	지 보 공	1	1.14	
	콘크리트 구조물	1	1.14	
	가시설 구조물	3	3.41	
	일반 구조물	2	2.27	
	기 타	1	1.14	
토사붕괴	소 계	6	6.82	
	토사붕괴	5	5.68	
	암석의 붕괴	1	1.14	
건설장비	소 계	12	13.64	
	이동식 크레인	6	6.82	
	고정식 크레인	2	2.27	
	리프트 승강기	1	1.14	
	자동차 등	1	1.14	
	기 타	2	2.27	
감 전	감전외선 철탑	3	3.41	
화재폭발	화재폭발	2	2.27	
운반취급	중량물 취급시	3	3.41	
질 식	질 식	1	1.14	